

#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[2024년 경인지방우정청]

※ 적용시기 : 2024. 5. 20. 입찰공고분부터

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	공사기간	[간접노무비]		[기타경비]		공사규모 (추정가액)	[일반관리비]		[이윤] (노+경+일) x 율	[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]				[산업안전보건관리비]						
		(직노) x 율		(재+노) x 율			(재+노+경) x 율			(직접공사비) x 율			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				
		건축	산업 설비 (건축)	건축	산업 설비 (건축)		건축, 산업설비	전문- 전기·통신- 소방·기타		종합건설업		전문건설업		□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		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과 [(재+직노) x 율 + 기초액]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
5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2.6	12.6	5.2	5.2	5억 미만	6.0	15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□ 안전관리비 대상액 <sup>*)</sup>		구분		기초액(천원)			
	7~12개월 (365일)	12.6	12.6	5.2	5.2								5억 미만	0.07	비계·구조물해체공사	0.68	일반건설공사(갑)	2.93	일반건설공사(을)	3.09
	13~36개월 (1095일)	12.8	12.8	5.6	5.6												중건설공사	3.43	철도·궤도신설공사	2.45
50억 - 30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2.3	12.3	5.5	5.5	30억 - 50억 미만	6.0	15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5억 ~ 50억 미만	0.16	석공사, 시설물유지관리, 철근콘크리트공사, 가스시설공사(1종)	0.32	일반건설공사(갑)	1.86	5,349	
7~12개월 (365일)	12.4	12.4	5.5	5.5	일반건설공사(을)												1.99	5,499		
13~36개월 (1095일)	12.5	12.5	5.8	5.8	중건설공사												2.35	5,400	철도·궤도신설공사	1.57
300억 - 1000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1.6	11.6	5.5	5.5	50억 - 100억 미만	5.5	12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5억 ~ 50억 미만	0.16	도장공사, 철강재설치공사	0.16	일반건설공사(갑)	1.97		
	7~12개월 (365일)	11.7	11.7	5.5	5.5												일반건설공사(을)	2.10		
	13~36개월 (1095일)	11.8	11.8	5.9	5.9												중건설공사	2.44		철도·궤도신설공사
1000억 이상	6개월 이하 (183일)	11.3	11.3	5.8	5.8	100억 - 300억 미만	5.0	10.0	구분	요율	구분	요율	50억 이상	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	* 적용제외: 문화재수리공사, 전기, 정보통신, 소방시설 ※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를 산정기준(국토부 고시 제2019-286호, 2019.6.19.)	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	일반건설공사(갑)	1.97		
	7~12개월 (365일)	11.4	11.4	5.8	5.8												일반건설공사(을)	2.15		
	13~36개월 (1095일)	11.5	11.5	6.2	6.2												중건설공사	2.66		철도·궤도신설공사
		36개월 초과 (1096일)	11.7	11.7	6.4	6.4	1000억 이상	4.5	9.0											

\* 기타경비항목: 수도광열비, 복리후생비,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, 여비·교통·통신비, 세금과공과금, 도서인쇄비  
□ 산업설비(건축) 해당공종: 지열공사, 소각시설 등

[산재보험료]	[환경보전비]	[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]
(노) x 3.56	(직접공사비) x 율	(직접공사비) x 율
* 모든 건설공사 적용, 노동부 고시 제2024-1호(2024. 1. 5.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구분	구분
[고용보험료]	도로(예시: 교량, 터널, 활주로 등)	공사규모(추정가액)
(노) x 율	플랜트(예시: 발전소, 쓰레기소각장 등)	요율
공사배정규모(추정금액)	지하철	50억 미만
[1등급] 1200억 이상	철도	50억 이상 - 100억 미만
[2등급] 800억 ~ 1200억 미만	상하수도(예시: 폐수, 하수처리장, 정수장 등)	100억 이상 - 300억 미만
[3등급] 520억 ~ 800억 미만	항만(간척, 준설): 옹벽 또는 준설토 방지막 설치	300억 이상 중심·중평제(토목 및 산업설비)
[4등급] 340억 ~ 520억 미만	항만(간척, 준설): 옹벽 또는 준설토 방지막 미설치	300억 이상 중심·중평제(건축)
[5등급] 210억 ~ 340억 미만	댐	터키 대안공사
[6등급] 130억 ~ 210억 미만	택지개발	* 적용제외: 전문공사, 문화재수리공사 ※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16-921호, 2016.12.19.)
[7등급] 고시금액 ~ 130억 미만	기타 토목(하천 등)	[공사이행보증수수료]
7등급 미만	주택(재개발, 재건축)	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
*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, 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(2021.7.1.), 고용보험법 시행령 * 총공사금액(도급금액+관급금액)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용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* 등급기준: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(조달청 공고 제2023-235호, 2023.7.6.) *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/산자부 고시 제2023-131호, 2023.7.1.)	주택(신축)	수수료
[건강보험료]	조경, 기타(전문, 개보수 공사)	70억 미만
[노인장기요양보험료]	(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)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, 운영·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고 표준 시장단가,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	70억이상~120억미만
[연금보험료]	(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) 시험검사비, 점검비, 교육 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,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산	120억이상~250억미만
(직노) x 3.545	※ 적용제외: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, 소방시설공사, 문화재 수리공사	250억이상~500억미만
* 공사기간 1개월(30일)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500억 이상
[퇴직공제부금비]		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
(직노) x 2.3		70억 미만
*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※ 국토부 고시 제2015-610호(2015.8.20.) 요율 적용		70억이상~120억미만
□ 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,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(단,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<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>을 기준으로 함)		120억이상~250억미만
		250억이상~500억미만
		500억 이상

\*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 
- (시행령 제42조 제1항) 추정가액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 
- (시행령 제6장) 대형공사계약(대안입찰, 일괄입찰), 특정공사의 계약  
- (시행령 제9장)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

[총 공사금액(도급금액+도급자관급금액)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]
주) 안전관리비(산업안전보건관리비) 대상액 -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,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,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합한 금액
* 건설업의 분류 - [일반건설공사(갑)] 건축건설, 교량건설, 도로신설, 철도·궤도의 보수복구,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- [일반건설공사(을)] 기계장치공사, 석도건설공사 - [중건설공사] 고제방(담)높이20m이상의 제방, 방파제, 안벽, 수력발전시설, 터널(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, 지하도,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) 신설공사 - [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] 철도, 궤도시설(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) 및 그에 따른 역사, 과선교, 승선선로 - [특수 및 기타건설공사(단독발주에 한함)] 준설, 조경(조경관련 전문 포함), 택지조성(경지 정리포함),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(타 공사와 병행하는 경우: 일반건설(갑) 적용)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
*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기준 (노동부 고시 제2022-43호, 2022.6.2.)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49호에 부칙에 따라 별표1, 별표5의 개정규정은 '24.7.1. 시행 예정
□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, ( )은 2000.7.31.이전 ('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' 제9조) - 추정가액10억미만으로 87.75%(85%)미만인 경우: 87.75%(85%) - 추정가액10억 ~ 50억미만으로 86.75%(83%)미만인 경우: 86.75%(83%) - 추정가액50억 ~ 100억미만으로 85.5%(80%)미만인 경우: 85.5%(80%)

위 적용기준은 경인지방우정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